2014년도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
최종보고서

2014.6.

삼정회계법인

제출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귀하

본보고서를「2014년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 용역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6월

삼 정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김 교 태

<목차>

Ⅰ. 용역의개요……1

1. 용역의목적…… 1
2. 용역의범위와주요내용…… 2

Ⅱ. 도시가스회사공급비용산정의이해……3

1. 도시가스요금의구성및규제현황…… 3
2.공급비용산정기준의목적…… 4
3.공급비용산정기준의총칙…… 5
4.공급비용산정기준의주요개정사항…… 13
5. 공급비용및도시가스요금의산정…… 27
6. 도시가스요금의 조정절차 …… 28

Ⅲ. 회사에대한이해……29

Ⅳ. 공급비용조정……31

1. 판매열량차이정산…… 31
2.판매물량검토…… 32
3. 회사제시공급비용에대한검토기준…… 34
4. 평균공급비용검토결과…… 35
5. 기본요금 산정…… 37
6. 취사전용기본요금산정…… 39
7. 사용량요금의산정 …… 43

Ⅴ. 기타검토사항……48

1. 사회복지시설 공급비용 경감부문 검토…… 48
2. 타 지역 도시가스회사와의 공급비용 차이 분석법 개정…… 48
3.지자체 배관투자지원 현황…… 51
4.요금 변동에 따른 2014년도 손익분석…… 52

부록

Ⅰ. 용역의 개요

1. 용역의목적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도시가스사업법제20조(가스의공급규정) 1항에의거하여도시가스의요금및기타공급규정을정하여시·도지사의승인을얻도록되어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방식의통일성을유지하기위하여 1993년 2월도시가스회사공급비용산정기준을제정하였으며, 2000년 11월, 2001년 10월, 2002년 10월, 2003년 1월, 2007년 5월, 2009년 2월, 2009년 9월, 2010년 6월, 2011년 4월, 2012년 4월, 2013년 3월, 2013년6월및 2014년2월에동기준을개정함.

○ 시·도지사는매년 7월 1일까지향후 1년간의도시가스공급에따른추정원가및판매물량을감안하여공급비용조정을하여야함.

○ 본용역은세종특별자치시지역내에서도시가스공급사업을영위하는중부도시가스㈜가상기기준및서식들에근거하여작성·제출한 2014년도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자료의적합성을평가하여 2014년도세종특별자치시도시가스용도별최종소비자요금(안)을제시하는데기본목적이있음.

2. 용역의범위와주요내용

○ 도시가스회사과년도공급비용및손익분석
- 전년도승인기준공급비용과실제발생비용검증
- 전년도기준인원대비실제연평균가용인원분석
- 전년도공급비용산정시용도별공급예정량과실적공급량검증

○ 도시가스회사 2014 년도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
- 도시가스회사가제출한자료의지역별회계분리의적정성검토
- 도시가스회사가제출한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내역과결산감사보고서등의자료를 토대로 2014 년도공급비용산출
- 인건비, 경비, 투자비, 공급물량등은세부항목별적정수요, 상승률, 사업계획및 여건, 타도시가스사와의비교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분석추정하고대안제시
  ※ 공급비용산정결과대안이다수인경우각안별장단점과최적안에대한의견및사유제시

○ 도시가스용도별요금산정
- 주택용(취사□취사전용□개별난방□중앙난방), 일반용(1)(2), 업무난방용, 공조용, 산업용, 열전용설비용으로구분하여소비자가격을산정하고적용대안제시
- 주택용은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기준에따라 2 부제(기본요금, 취사전용기본요금) 요금체계로설계
- 취사전용기본요금의적정성검토결과및필요시재산정
- 공급비용및요금은타시□도와의형평성과현행요금수준등을고려하여산정

○ 도시가스회사 2014 년도예상손익분석
- 현행및변경요금적용시를대비하여 2014 년도손익분석

Ⅱ.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의 이해

1. 도시가스요금의구성및규제현황

○ 국내의도시가스사업은도·소매로구분된이원화된구조로, 도시가스사업법에의하여 각공급단계별사업자의독점권을보장하는한편, 소비자보호를위하여관련요금을직접적으로규제하고있음.

○ 현행도시가스요금의구성및관련규제사항은다음과같음.

공급구조	사업자	요금구분	구분	현행 요금(*)	구성비율	관련 기준	요금승인
도매 부문	한국가스 공사	도매요금	원재료비	836.85원/㎥	81.8%	도시가스 원료비연동제 시행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도매공급비용	91.21원/㎥	8.9%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	
소매부문	도시가스사	소매요금	소매공급비용	94.88원/㎥	9.3%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장
-	-		최종 소비자요금	1,022.94원/㎥	100%		

(*)2014년 5월 현재 중부도시가스 및 한국가스공사 주택난방용 원재료 및 도·소매 공급비용 기준

○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 2항에의거소매도시가스요금의승인권자는각지방자치단체장임.

○ 도시가스회사공급비용의범위는최종소비자요금중 9.3%에해당하는소매공급비용에한정됨.

2. 공급비용산정기준의목적

○ 공급비용산정기준은시·도지사가도시가스소비자의이익증진과도시가스사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일반가스사업자의공정하고적정한공급비용산정시적용할 객관적이고일관성있는기준을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음.

○ 공급비용산정기준은총괄원가주의채택, 도시가스공급에따르는비용의결정방법, 적정원가의구성및산출방법, 요금기저및투자보수의구성과산출방법에대한사항을 전반적으로규정하고있음.

○ 공급비용산정기준의연혁은다음과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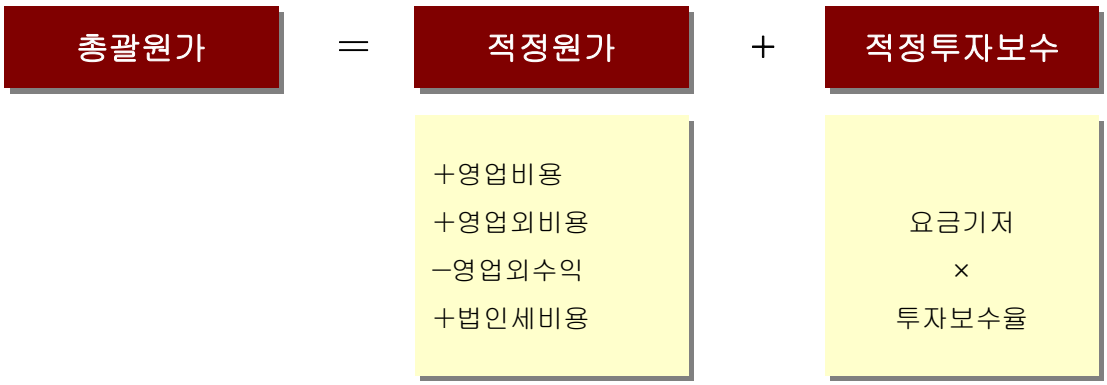
구분	내용
1993년 2월	공급비용산정기준제정(동력자원부)
2000년 11월	공급비용산정기준개정(산업자원부)
2001년 3월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실무편람(산업자원부)
2001년 5월	도시가스사업회계처리준칙(산업자원부)
2003년 1월	판매량오차정산제실시(산업자원부)
2007년 5월	ROE산정시 CAPM방식적용등(산업자원부)
2009년 2월	사회적배려대상자요금경감적용(지식경제부)
2009년 9월	철거비용공급비용에반영(지식경제부)
2010년 6월	냉방용소매공급비용산정기준개정(지식경제부)
2011년 4월	공급비용산정기준및실무편람개정(지식경제부)
2012년 4월	거래단위부피에서열량기준으로변경
2013년 3월	보급확대를위한자기자본보수율가산규정개정
2013년 6월	고객센터지급(위탁)수수료관련산정기준개정
2014년 2월	기부금관련산정기준개정

○ 도시가스회사공급비용은매년 7월 1일이전에확정및부과하도록도시가스회사공급 비용산정기준에서규정하고있음.

3. 공급비용산정기준의총칙

○ 공급비용산정기준상공급비용(요금)은도시가스사업자가가스를공급하는데소요되는총괄원가를보상하는수준에서결정되도록규정하고있음.

○ 총괄원가의구성은다음과같음.



배관투자재원

○ 시·도지사는도시가스사업의여건등을감안, 배관설비의증설을지원하기위하여공급설비이용효율제고로인한원가인하요인발생시그범위안에서필요에따라총괄원가외에별도의배관투자재원을가산할수있음.

3.1 적정원가의산정

○ 적정원가는도시가스의공급과관련하여직접적으로발생하는원가만포함됨. 또한적정원가는사업자의성실하고능률적인경영하에서도시가스공급에소요되는원가만포함됨.

○ 적정원가 =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영업외수익+ 법인세비용

○ 적정원가를구성하는영업비용은다음과같은방법에의하여산정됨.

구분		산정방법
영업비용	인건비	- 저장·기화, 공급관리, 판매·일반관리부문별적정인원수와 정부의임금정책등을고려하여산정 - 인건비에는급여및임금, 상여금, 제수당및퇴직급여를포함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공급설비에대한감가상각은정액법으로하며, 내용연수는세법을준용하여 20년(단, 94년이전취득분및 95~98년까지의 취득분은각각 11년, 16년적용) - 공급설비외의자산은사업자의상각방법과내용연수를적용 - 공급설비의감가상각대상금액은시설분담금및투자재원을 제외한최초의취득가액으로하고, 자산재평가의경우재평가 이전의취득가액을기초로감가상각비를계산
	무형자산 상각비	- 사업자가적용하는내용연수를적용하여매기균등액을상각
	기타의영업 비용	- 각비용항목별로비용발생변수를감안하고물가변동요인을 고려하여산정 - 접대비등관계법령에법정한도액이정해져있는비용은그한도범위내에서반영

- 인건비(퇴직급여 포함)의 경우 회사의 임금정책과 정부의 임금정책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의 경우 1)공급설비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표준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2)건물, 구축물, 집기비품, 기타유형자산등 공급

설비외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는 회사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타 영업비용의 경우 각 비용항목별 비용발생 변수를 감안하고 물가변동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영업외비용및수익은다음과같은방법에의하여산정됨.

구분		산정방법
영업외비용등	영업외비용 (가산항목)	- 요금기저항목과의일관성등을감안하여이자비용, 유가증권 및투자자산관련손실등은적정원가에서제외 - 기타영업외비용은직전년도실적금액을거치하여반영 - 기부금의경우도시가스공급과의관련성, 지역내에너지복지 등사회공헌, 요금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시도지사가적정원가반영여부결정 -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발생하는도시가스공급과관련한영업외비용에현저한증감을유발하는사항과관련한비용은적정한방법으로원가에반영
	영업외수익 (차감항목)	- 요금기저항목과의일관성등을감안하여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이자및투자자산관련이익은적정원가에서영업외수익으로공제하지않고, 공급비용산정에서제외 - 기타영업외수익은직전년도실적금액을거치하여반영 -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발생하는도시가스공급과관련한영업외수익에현저한증감을유발하는사항과관련한수익은적정한방법으로원가에반영

- 영업외손익의 경우 차년도 영업외손익의 추정이 어려우므로 전년도 실적금액을 거치하여 요금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개념적으로 볼 때 영업외비용 및 수익이 도시가스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총괄원가 산정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하며, 도시가스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제외하여야 타당함.
- 한편, 영업외비용중 이자비용의 경우 적정투자보수의 타인자본보수에서 고려되므로 적정원가 산정시 영업외비용에서는 고려하지 아니함.

○ 법인세비용은다음과같은방법에의하여산정됨.

구분	산정방법
법인세비용	- 도시가스사업부문에서발생한이익에대한법인세비용을반영

3.2 적정투자보수의산정

○ 적정투자보수는사업자가도시가스를제조, 공급하기위하여직접공여하고있는진실하고유효한자산에대한적정한보수를의미함.

○ 적정투자보수는“요금기저×적정투자보수율”에의하여산정되며, 요금기저는사업자가도시가스공급사업을위하여 1년동안투자된또는투자될금액을의미하며, 적정투자보수율은이러한투자금액에대한적정자본비용을의미함.

○ 요금기저는“유형자산(일정분의건설중인자산포함) + 무형자산 + 운전자본”으로구성되며, 구체적인산정방법은다음과같음.

구분		산정방법
요금기저	**순가동설비자산액**	-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적정원가에서산입되었던감가상각누계액과증여자산·시설분담금및투자재원과같이사업자가부담하지않은자본적수입의누계를차감 - 토지와공급설비의재평가차익은포함하지않음 - 기초순가동설비자산액은직전년도결산서상의가액을기준으로산정 - 기말순가동설비자산액 = 기초순가동설비자산액 + 당해연도투자계획–자산처분계획
	건설중인자산	- 공급설비 :당기건설중인자산평균가액× 자기자본비율(건설자금이자자본화하지않은경우는 100%) - 기타자산 :기초건설중인자산가액과회사의계획상건설중인자산기말가액의평균금액
	무형자산	- 기초가액에당기상각액및당기취득과처분을고려한기말추정금액의평균금액

	운전자금	- 당해연도원재료비를제외한적정영업비용에서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액을차감한금액의 2개월분

- 순가동설비자산액에 대한 요금기저 산정은 사업자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만 인정되므로, 시설분담금 및 투자재원 취득분과 재평가차액분은 제외하고 산정됨.
- 건설중인자산(공급설비)에 대한 요금기저 산정은 건설자금이자를 건설중인자산의 취득원가로 자본화한 경우 타인자본 조달분은 이자비용이 회계처리상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 구성하게 되므로(이미 자본비용을 보상 받았으므로) 자기자본구성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요금기저만을 산정함. 반면에 건설자금이자를 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건설중인자산 전체가 자본비용을 보상받아야 할 금액으로 간주되어야하므로 건설중인자산가액의 100%가 모두 요금기저에 반영되어야함.

○ 투자자본에대한적정허용보수율을의미하는적정투자보수율은다음과같은방법에의하여산정됨.

구분		산정방법
적정투자보수율(*)	**자기자본보수율**	- 자기자본보수율 :자기자본에대한세후보수율은예금금리등으로적정하게산정한기회비용을고려하여산정.다만다음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상기자기자본에대한세후투자보수율에 2%p 내지 3%p를가산하여적용하되이로인하여증가되는세후투자보수상당액을미공급지역및소외지역도시가스보급을위하여투자한다. 다만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산율을 3%p 이내로할수있음.(2013.3.8 개정) 1. 도시가스사중직전년도도시가스보급률(공급권역내공급가구/공급권역내공급가능가구수)이전국평균보급률미만인경우 2. 도시가스보급률이전국평균보급률을상회하더라도공급권역내미공급지역및소외지역의도시가스보급확대를위해시·도지사가인정하는경우 - 자기자본금액 = 유상증자누계액(주식발행초과금포함) +

		당기순이익누계액(결손금제외)–배당금누계액
	타인자본 보수율	- 타인자본보수율 :직전년도차입금평균월말잔액으로차입금에대한이자를나누어구한율에법인세를반영하여산정 - 타인자본 :직전년도차입금평균월말잔액으로하며, 직전년도차입금은당좌차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와장기차입금으로구성하고, 수용가시설전대차입금은제외함

(*)적정투자보수율 = 자기자본보수율×자기자본구성비율 + 타인자본보수율× 타인자본구성비율

○ 2007년도시가스회사공급비용산정기준의개정시, 자기자본보수율산정방식으로균형시장하에서기대수익률과위험과의관계를정립한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방식이도입되었음.

○ CAPM을이용한자기자본보수율산정의세부적인방식은다음과같음.

$$R_i = \overline{Rf} + (R_m - R_f) \times \beta_i$$

(*)CAPM : Capital Asset Pricing Model

자본비용 및 위험도를 고려한 주주 요구 수익율 반영		
구 분	세부 내용	산정 방식
무위험수익률 (R_f)	➢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것으로 투자에 있어서 위험이 전혀 내포되지 않은 기대수익률임.	5년만기 국고채 직전1년 평균 수익율(3.24%)
위험프리미엄 ($R_m - R_f$)	➢ 투자위험의 감수대가를 위험프리미엄이라 하며 시장수익률(Rm)과 무위험이자율(R_f)의 차이로 나타냄. ➢ 경제변동성, 정치적 위험, 시장구조 등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됨.	6% 일괄 적용
주가의 민감도 (β_i)	➢ 시장수익률(Rm) 변동에 대한 특정 자산 수익률 변동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장위험에 대한 해당 자산의 상대적인 체계적위험을 측정하는 계수 ➢ 사업의 유형, 영업위험, 재무위험 등 회사고유의 위험에 의해 결정됨.	KEPCO, KOGAS등이 포함된 산업평균주가지수를 활용한 β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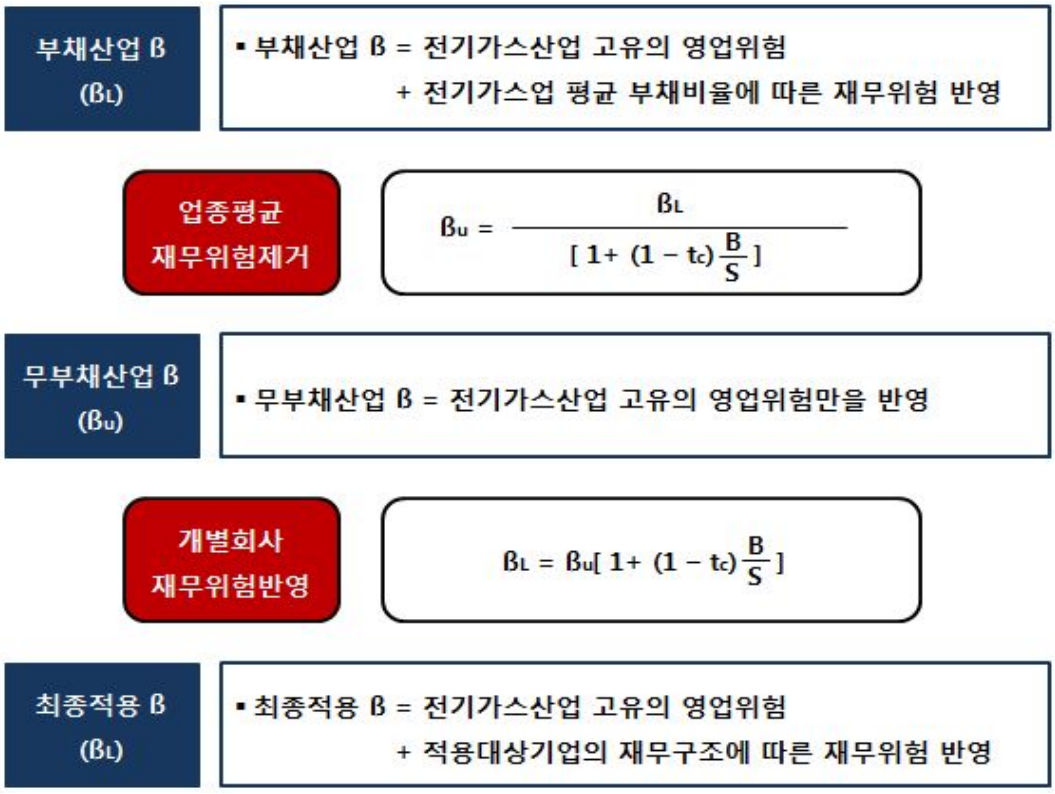
○ CAPM 방식에의한자기자본보수율산출은무위험수익률, 위험프리미엄및주가의민감도(β, 베타)에 의하여 결정됨.

○ 상기세가지주요결정요소중무위험수익률과위험프리미엄의경우상기방식에의하여

확정된수치가전도시가스사에동일하게적용되나, 주가의민감도를나타내는베타(β)의 경우, 각 회사의 자본구조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 회사별로 별도 산정하게 됨.

○ 전기가스업주가지수를이용하여산정한주가민감도의경우, 전기가스업고유의영업위험뿐만아니라전기가스업의평균부채비율에따른재무위험까지포함하고있음.

○ 따라서, 전기가스업지수에포함된재무위험을제거하고각회사고유의영업위험을반영하기위하여아래의그림과같이 Hamada모형을적용하여산출된베타를활용하여각 회사별자기자본보수율을산정하게됨.



4. 공급비용 산정기준 주요 개정사항

4.1 공급설비내용연수

○ 기존공급비용의산정기준상공급설비의내용연수는세법상의기준내용연수를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세법상공급설비의기준내용연수가변경되어현재까지미상각자산이존재하는'99년 1월 1일이전에취득한자산에대해서는취득연도세법을준용하도록단서조항으로규정하고있음.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2조규정에의한공급설비의기준내용연수는법인세법시행규칙의별표 6(업종별자산의기준내용연수) 개정에따라과거지속적으로변경됨.

구분	기준내용연수(법인세법시행령)
'94년 12월 31일이전취득분	11년
'95년 1월 1일~'98년 12월 31일취득분	16년
'99년 1월 1일이후취득분	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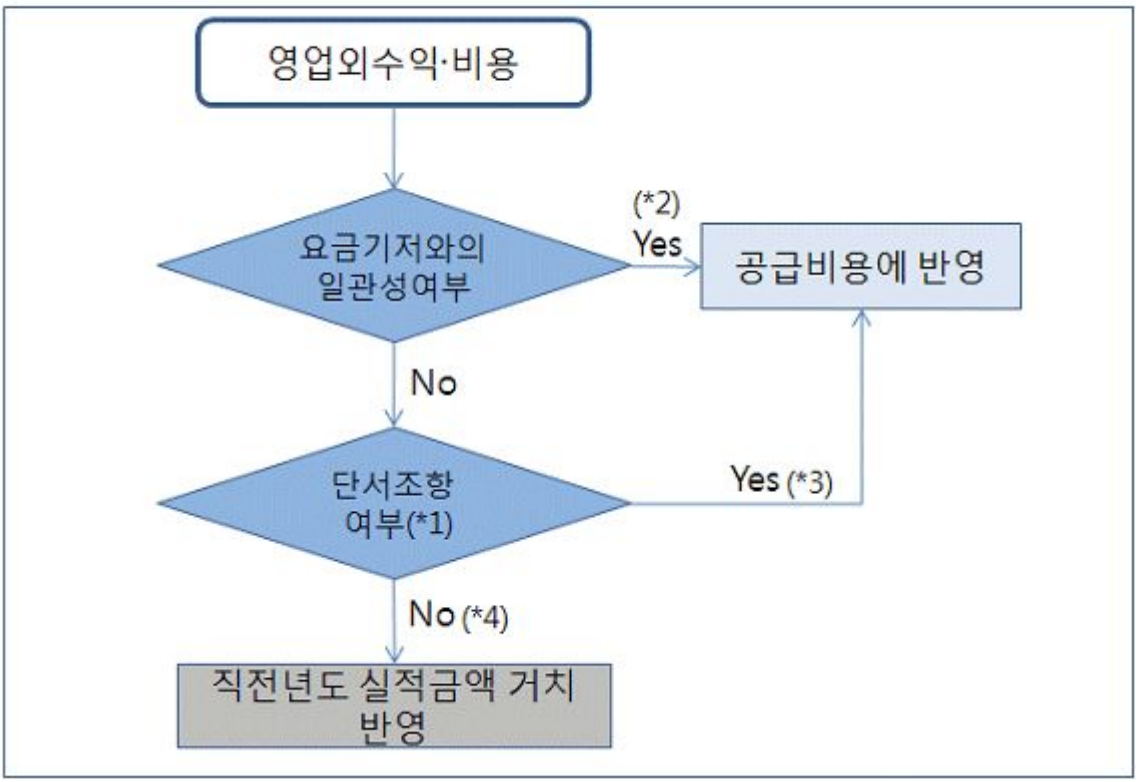
○ 기존공급비용산정기준은법인세법시행규칙상업종별자산의기준내용연수가개정시마다단서조항으로공급설비의기준내용연수결정을위한취득시점을명시함에따라이후법인세법시행규칙의개정이발생할경우매번단서조항을추가해야하는문제점이존재함.

○ 따라서공급설비의감가상각비산정을위해적용할기준내용연수를해당자산의취득당시법인세법시행규칙상업종별자산의기준내용연수를적용하도록공급비용산정기준을개정함.

4.2 영업외수익및비용

○ 공급비용산정기준상영업외수익및비용의공급비용반영은요금기저항목과의일관성 및직전년도실적금액을거치하여반영하도록규정함.

▶ 영업외수익·비용의 공급비용 반영여부 판단기준



(*1) 다만, 도시계획법, 도로법등에따라철거되는가스공급설비등시·도지사가정당하다고인정하는가스공급설비의처분에따라발생한비용에대하여는적정한방법으로원가에반영함.

(*2) 요금기저에포함된건물, 토지등에서발생한임대료수익등은공급비용에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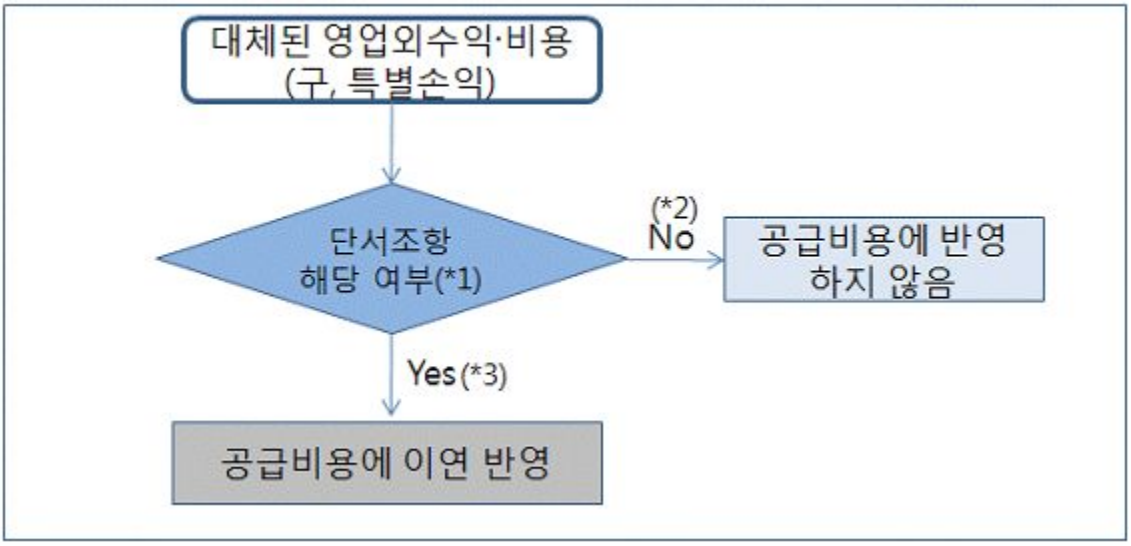
(*3) 원인자에의한공급설비이설에의해발생한배관이설수익(비용)

(*4) 기부금, 기타영업외수익(비용) 등직전년도공급비용산정시반영된항목

○ 기업회계기준서제21호제정으로인해기존기업회계기준상특별손익으로분류되던항목의공급비용반영은공급비용산정기준상특별손익의단서조항에해당되는경우(LPG

제조설비폐기손실)에한해서공급비용에이연반영함.

▶ 대체된 영업외수익비용(구, 특별손익)의 공급비용 반영여부 판단기준



(*1) 도시가스회사공급비용산정기준제10조의단서조항을의미

(*2)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재해손실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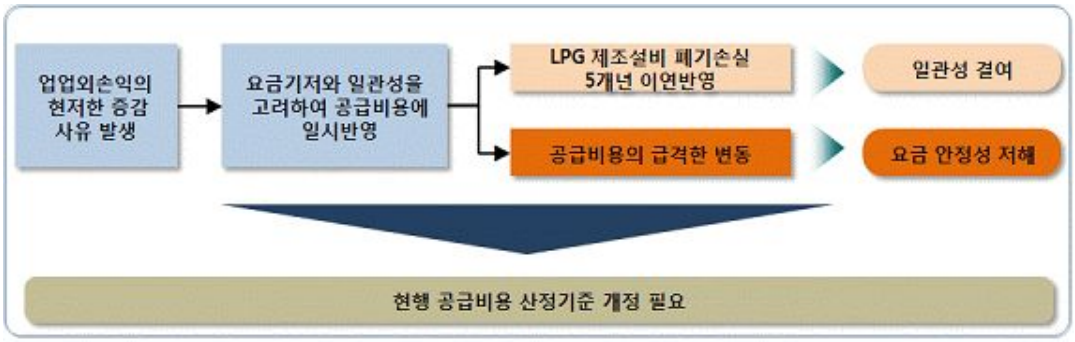
(*3) 도시가스공급방식의변경등정책적요인에의하여발생한유휴제조설비등시·도지사가정당하다고인정하는가스공급설비의처분에따라발생한손익(LPG 제조설비폐기손실)

○ 기존공급비용산정기준은상기업회계기준서제21호제정으로인해기존기업회계기준상특별손익을공급비용산정기준상영업외손익으로대체함에따라기존영업외수익·비용규정과의일관성이결여됨.

- 현행영업외수익·비용은공급비용반영여부를판단후일시에관련수익과비용을공급비용에반영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구)특별손익의단서조항해당항목은관련손익을공급비용에이연하여반영하도록규정

- 공급비용의증가를유발하는영업외손실은이연반영하도록하고, 공급비용의감소를유발하는영업외수익은일시에반영하도록하는현행공급비용은일관성이결여됨.

○ 기존공급비용산정기준은영업외수익·비용의현저한증감을유발하는사항을일시에공급비용에반영하도록규정함에따라공급비용(요금)의안정성을저해함.



○ 이에따라기존공급비용산정기준상영업외수익·비용반영방식에의해유발되는문제점(일관성결여, 요금의안정성저해, 효율성제고유인저해)을개선할수있도록영업외수익비용항목에관련된공급비용산정기준을개정함.

○ 기존공급비용산정기준의개정방향은영업외수익·비용에현저한증감을유발하는사항에대해공급비용산정기준이다음의두가지조건을충족시키는방향으로이루어짐.

①영업외수익과영업외비용의공급비용반영방식의일관성유지

②영업외수익·비용에현저한증감을유발하는사항의공급비용이연반영

○ 상기두가지조건을충족시킬수있는방안으로는기존영업외수익·비용항목과 (구)특별손익으로부터대체된영업외수익·비용항목중 “ 영업외손익에현저한증감을유발하는사항”의기준을충족하는경우일관된기준에따라공급비용에반영하도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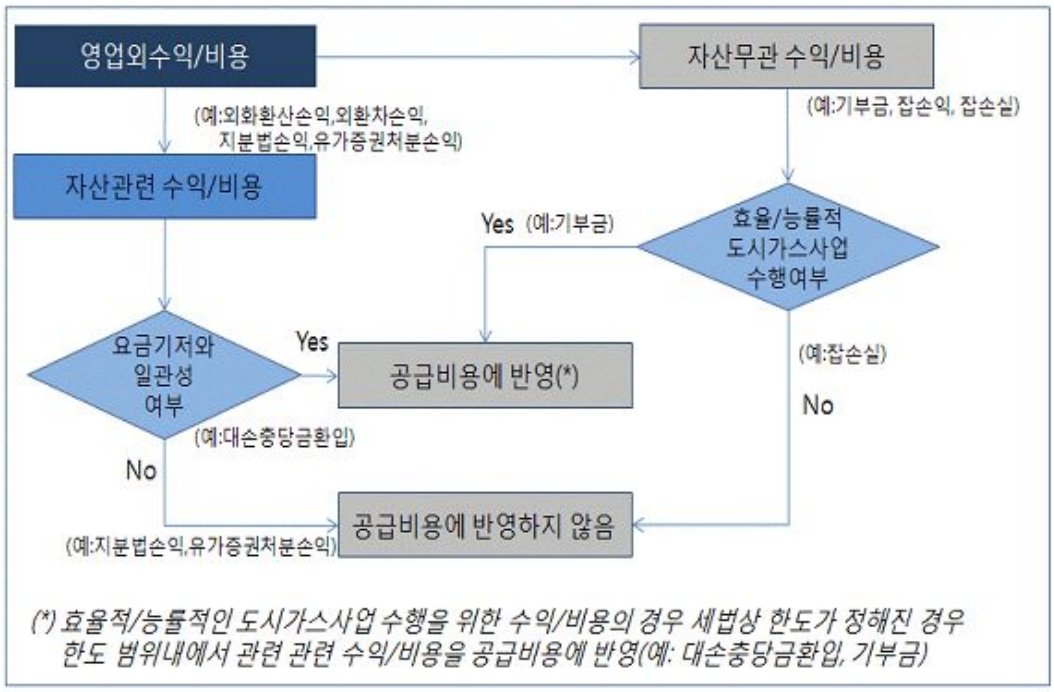
○ “영업외수익·비용에현저한증감을유발하는사항”에서“현저한”은모호한개념으로관련기준은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실무편람에제시함.

○ 영업외수익·비용에현저한증감을유발하는사항의기준을충족시킨경우영업외수익·비용을공급비용반영방식에대한조항을신설함.

○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발생하는도시가스공급과관련한유형자산의처분등으로영업외손익에현저한증감을유발하는사건과관련하여발생한손익은적정한방법으로원가에반영함.

○ 영업외수익·비용에현저한증감을유발하는사항관련기준을추가함에따라영업외수익·비용의공급비용에반영여부를판단하는기준은다음과같이변경됨.

▶ 영업외수익/비용의 공급비용 반영 여부 판단기준



(*) 단서조항: 다만, 도시계획법, 도로법등에따라철거되는가스공급설비등시·도지사가정당하다고인정하는가스공급설비의처분에따라발생한비용에대하여는적정한방법으로원가에반영함.

4.3 판매열량정산금액산정방식

○ 기존공급비용산정기준상판매열량차이정산대상이되는경우에정산금액은정산단가에판매열량차이물량을곱하여산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정산단가산정과정에불명확성이존재하여, 이를합리적으로조정할필요성이제기되어왔음.

○ 이에따라정산금액산정방식을승인총괄원가와회수총괄원가와의차이를통해산정하

도록하였으며, 정산금액산정시적용할단가는시·도지사가승인한용도별공급비용을 적용함으로써기존산정기준상의문제점이었던정산단가산정의불명확성을해소하는 방향으로공급비용산정기준을개정함.

○ 또한기존공급비용산정기준은판매열량차이로인해정산금액이발생할경우다음연도 공급비용산정시총괄원가에가감하여반영하도록규정하였으나과다한판매열량차이 가발생할경우이로인한정산금액이차년도공급비용의과다한변동을초래함에따라요 금안정성제고를위해판매열량차이정산금액의이월규정을도입함.

○ 판매열량차이가±3%를초과하는경우정산금액이발생하며이러한정산손익은원칙적 으로다음연도공급비용산정시총괄원가에서가감하여반영함. 그러나정산금액으로 인하여다음연도평균공급비용의현저한증감을유발하는경우적정한방법으로이연하 여반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여기서“현저한증감”과“적정한방법”은다음과같 이정의함.

구분	개념정의
현저한증감	-현저한증감에대한판단기준은요금산정시적용된소비자 물가상승율(혹은최근 3개년소비자물가상승율)로함. -정산금액으로인한평균공급비용변동율이소비자물가상 승율을초과하는경우현저한증감이발생한것으로간주
적정한방법	-적정한방법이란 3개년균등반영방식을의미함. -정산금액으로인하여차기평균공급비용에현저한증감을 유발한경우동정산금액은차기이후 3개년간균등이연하 여반영할수있음.

○ 판매열량차이에대한정산규정은기본적으로요금안정성을유지하면서도시가스요금 산정의정확성및적시성을제고하고자하는제도이나특정년도에판매량차이가과도하 게발생하여이를일시에반영함에따른요금변동성이과도하게발생할수있음. “제5조 의 2 ③항”의규정은판매량차이정산으로인한요금안정성저하문제를완화하기위하 여정산금액으로인한공급비용변동률이일정한조건을충족한경우정산금액을이연하 여반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한편정산금액을이연반영할경우차차기(2차)년도이연분정산금액에는이연에따른자본비용을정산금액에고려하여야하는바, 요금산정시적용한투자보수율을적용하여 산정함. 즉. “2차년도정산금액= 균등이연된정산금액×(1+1차년도투자보수율)“의 산식을적용하여정산금액을이연반영함.

4.4 특별손익관련사항

○ (구)기업회계기준은제51조에서특별손익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기준은공급비용산정과관련하여제10조에특별손익을규정함.

○ (구)기업회계기준제51조특별손익은’06년 2월 6일자로제정되어’08년회계연도부터적용된기업회계기준서제21호“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Ⅰ”로대체되면서종전특별손익은영업외수익및비용으로변경됨.

○ 기업회계기준서제21호“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Ⅰ”는특별손익을영업외수익및비용에기존기업회계기준의특별손익관련규정을포괄함. 이에따라재무제표에는더이상 특별손익이라는명칭의계정과목을사용하지않음.

○ 공급비용산정기준에서공급비용산정은외부감사를받은재무제표와결산서에기초하여산정하도록규정함으로써기업회계기준서의개정사항을반영필요가있어기존공급비용산정기준상특별손익규정은영업외수익및비용항목으로대체함.

4.5 건설중인자산

○ 요금기저에반영할건설중인자산가액의산정은건설중인자산관련차입금이자비용(이하‘건설자금이자’라칭함)에대한회계처리방법에따라다르게처리되어야함. 이에따라공급비용산정기준에서도회계처리방법에따라적정하게산정하되자기자본으로조달한금액을초과하지못한다는개념규정만언급함.

○ 건설자금이자의회계처리방법은 1)손익계산서상영업외비용항목으로즉시비용화하는방법과 2)건설중인자산의취득원가로자본화하는방법으로분류됨.

- 건설자금이자를손익계산서상의이자비용으로처리하는경우건설중인자산전체가자본비용을보상받아야할금액으로간주되어야하므로요금기저에포함된건설중인자산가액은 100%가모두반영되어야함. 또한건설자금이자는적정투자보수율산정시고려되는차입금적수및이자비용에모두반영되어야함.
- 건설자금이자를재무상태표상의건설중인자산의취득원가로자본화한경우건설중인자산투자비중타인자본조달분은이미이자비용자본화로보상받게됨. 따라서자본비용을보상받아야하는건설중인자산투자비는자기자본조달분상당액만보상받으면됨. 그러나건설중인자산마다타인자본조달비율이다르므로개별적으로자기자본구성비율을직접적으로산정하는것은너무복잡해서비용대비효익이낮을수있음. 따라서이러한경우"건설중인자산×회사전체자기자본구성비율"을곱해서요금기저에반영할건설중인자산을산정하면족할것으로판단됨. 다만이경우건설자금이자는적정투자보수율산정시고려되는차입금적수및이자비용에서모두제외되어야함.

회계처리방법	요금기저에반영할건설중인자산가액
비용화(손익계산서) 회계처리	당기건설중인자산평균가액×100%
자본화(재무상태표) 회계처리	당기건설중인자산평균가액×적정투자보수율산정시적용한자기자본구성비율

4.6도시가스열량제도개선

○ 도시가스열량제도는도시가스열량조절비용증가, 바이오가스등대체천연가스활성화, 표준열량제도의경직성해소, 사용한열량만큼요금산정및타에너지원과비교선택용이하는점을도입배경으로하고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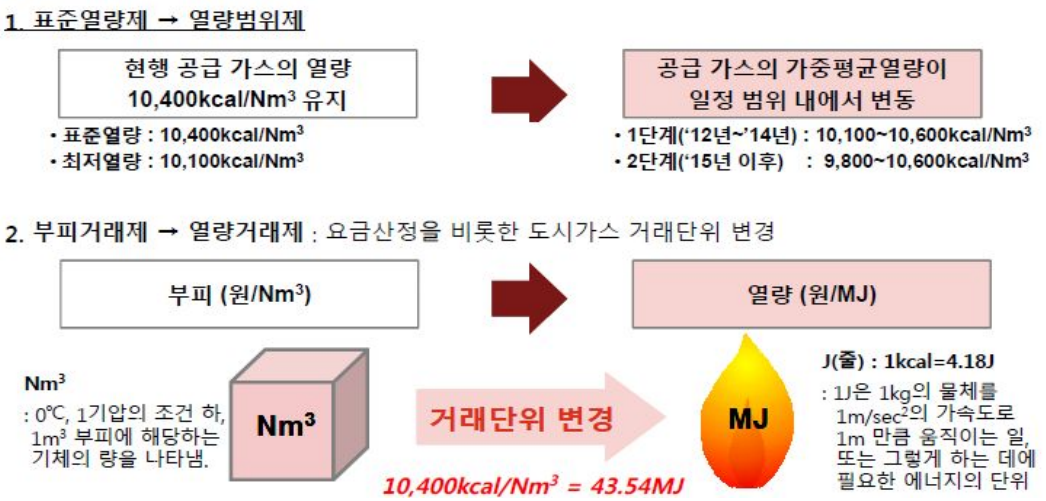
- 열량조절비용증가: 저열량시장에서현행표준열량에적합한고열량도시가스만을선별수입해야하고, 표준열량(10,400Kcal/㎥) 이상으로 증열하기 위한 열량관리가 필요함.
- 바이오가스등대체천연가스활성화: 열량이낮은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석

탄-SNG 등대체천연가스활성화를위해넓은범위의열량제도로개선이필요함.

- 표준열량제도의경직성해소: 현표준열량제도는저열량추세지속시표준열량과최저열량하향조정필요성이제기되고빈번한표준열량조정으로소비자의불편을초래하게됨.
- 사용한열량만큼요금산정: 대부분의유럽및미국선진국들은열량으로소비자요금을지불하고있고우리나라도도시가스수입및발전소사용량은열량요금으로산정되고있으나도시가스사용량만부피량요금으로산정되고있어사용한열량만큼요금산정이필요함.
- 타에너지원가비교선택용이: 도시가스요금이부피단위로만산정되므로전기등열량단위를사용하고있는타에너지원과의연료비요금비교가쉽지않음.

○ 도시가스열량제도주요개선사항은기존표준열량제도에서열량범위제도로변경과이에따라부피요금대신열량요금으로의전환임.

- 표준열량제도 -->열량범위제도: 열량관리에대한소비자비용부담을줄이기위해현행표준열량제도를수입되는도시가스열량에따라매월평균열량이자동으로정해지는열량범위제도로개선시행예정임.
- 부피요금 -->열량요금: 사용한도시가스의열량만큼소비자가지불하는방식이며,요금은부피량(원/Nm^3)에서열량단위(원/MJ)로개선됨.



○ 도시가스열량제도도입에따른소비자요금은가정용및산업용등계량기량(Nm^3)에한

국가스공사도매공급지점의월간가중평균열량(MJ/Nm^3) 및도시가스요금단가(원/MJ)를곱하여산정하게됨.

- 최종소비자도시가스열량요금(원)

= 가정용및산업용계량기량(Nm^3) × KOGAS 도매공급지점의월간가중평균열량(MJ/Nm^3) ×도시가스요금단가(원/MJ)

4.7자기자본보수율가산규정

○ 직전년도도시가스보급률이직전년도전국평균보급율미만인지역의도시가스사업자는투자활성화를통한보급촉진을위하여 CAPM방식에의하여산정된세후자기자본보수율에 2% 내지 3%를가산함. 또한직전년도전국평균보급율이상인지역의경우에도시·도지사가미공급지역및소외지역의도시가스보급확대를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가산율을 3% 이내로할수있음. 한편, 이에대한근거자료를명확히하기위하여직전년도전국평균보급률자료와회사의도시가스보급률자료를공급비용명세서에첨부하여제출하도록함.

○ 2013년 3월개정된자기자본보수율가산규정은기존 2%에서 1%를추가함으로써미공급지역에대한투자유인확대및각지자체에대한재량권을부여함.

○ 세후자기자본보수가산규정을적용받는도시가스사업자의경우이로인한투자보수증가분을반드시도시가스미공급지역및소외지역의도시가스보급을위하여투자하여야함. 또한투자보수증가분은다음과같이산정함.

구분	계산방식
①세후자기자본보수추가분	2% 또는 3%
②공급비용산정명세서상요금기저	시·도지사가인정한요금기저
③투자보수증가분(=①×②)	= 2%(또는 3%) ×인정요금기저

○ 공급가능가구수라함은원칙적으로공급권역내가구수중공급이기술적으로불가능하거나경제적으로타당하지않은가구수를제외한도시가스공급이가능한가구수를기준으로하여야할것이나, 이는주관적인판단이개입될수있으므로행정안전부가발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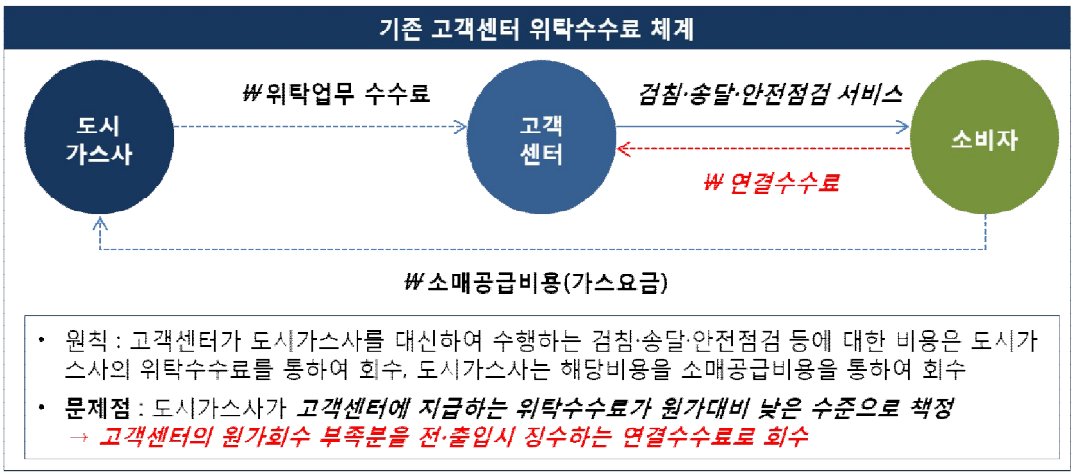
는공급권역내의가정용가구수를기준으로하는것이객관성및검증가능성측면에서적정한것으로판단됨.

○ 또한공급권역내공급가구수는도시가스협회가매월발표하는공급권역내가정용수요가수를기준으로하는것이타당함. 따라서도시가스보급율은다음과같이산정함.

구분	계산방식
1. 공급권역내가정용세대수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상발표자료
2. 공급권역내가정용수용가수	도시가스사업편람에서발표하는자료
3. 도시가스보급률(2÷1)	=공급권역내가정용수용가수÷공급권역내가정용세대수

4.8 고객센터지급(위탁)수수료관련공급비용산정기준개정

○ 원칙적으로고객센터가 수행하는 검침·송달·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대한 비용은 고객센터에 대한 지급수수료(위탁수수료)의 형태로 공급비용 산정에 포함되어 소비자에 요금의 일부로 회수하고 있으나, 원가수준대비 낮은 수준의 위탁수수료 수준으로 인하여 고객센터의 미회수비용을 소비자에게 연결수수료의 일부로 직접 징수하는 문제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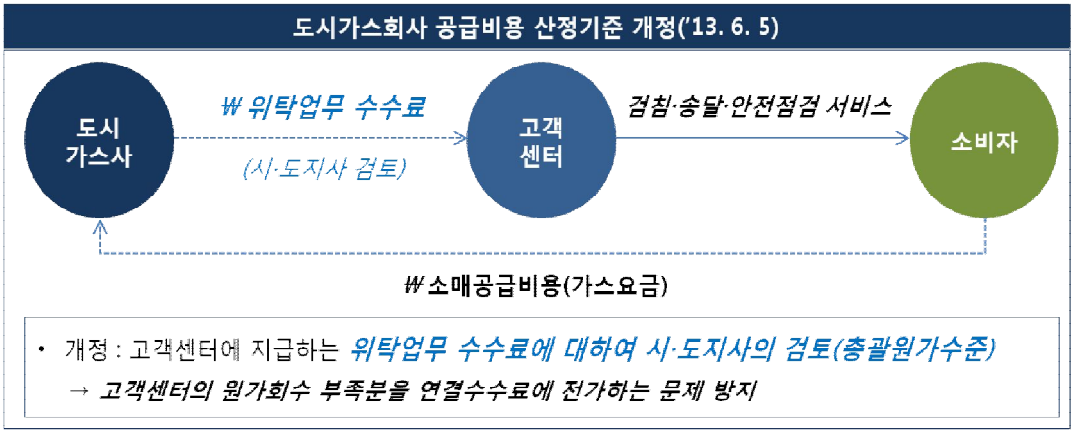


- 도시가스회사는검침·송달·안전점검등의업무에대하여도시가스회사가직접수행하는대신고객센터에해당업무를위탁한후고객센터에위탁수수료를지급하고있으며,
- 도시가스회사는공급비용의산정시고객센터에대한위탁수료를기타영업비용(지급

수수료)으로적정원가에포함하고있음.

- 하지만현재도시가스회사가고객센터에지급하는위탁수수료의수준이고객센터의실제발생원가대비낮은수준으로설정되어위탁수수료만으로고객센터의비용을회수할수없음.
- 따라서고객센터는미회수비용을일부를소비자의전·출입시연결서비스에대하여소비자에직접징수하는연결수수료에가산하여회수하고있으며,
- 이에따라지역별상이한연결수수료수준및실제발생원가대비과다한수준의연결수수료수준으로인한소비자의민원이발생함.
- 참고적으로 2013 년현재중부도시가스의연결수수료는 21,000 원(재료비 5,000 원,출장/시공비 16,000 원)으로타지자체비해낮은수준임.

○ 상기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당해 6 월 5 일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개정을 통하여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시·도지사가검토를통하여고객센터의발생원가를보상할수있는수준에서결정하고, 고객센터가미회수비용을연결수수료로전가하여수령하지않도록함.



- 개정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기준은도시가스회사가고객센터에지급하는위탁수수료에대하여시·도지사가총괄원가수준에서결정하도록하며,
- 도시가스회사의공급비용산정시고객센터에대한위탁수수료(시·도지사가총괄원가수준에서결정한금액)는기존의기타의영업비용항목에서분리하여별도의비용항목으로구분하여적정원가에가산하도록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 공문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년도 공급비용 산정 시에 상기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 상기 개정사항의 반영을 위하여는, 총괄원가 수준에 따른 고객센터 위탁수수료의 산정 및 이에 따른 도시가스회사의 총괄원가 재산정 작업이 필요함.

○ 세종특별자치시는당해년도 공급비용의 산정 시에는 기존의 고객센터 위탁수수료를 공급비용에 반영하지 않고,향후 요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수수료를 공급비용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임.

4.8 기부금관련공급비용산정기준개정

○ 기존의 공급비용 산정기준은 실적을 기준으로 발생한 비용 전부를 공급비용에 반영시켰으나, 2014 년 2 월 산정기준 개정하면서 반영 할 수 있는 기부금의 범위를 한정함.

○ 즉, 기부금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과의 관련성, 지역 내 에너지복지 등 사회공헌,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적정원가 반영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정됨.

5.공급비용 및 도시가스요금의 산정

○ 공급비용의단가는총괄원가를당해연도의판매물량으로나누어산정함.

○ 도시가스요금은단일요금체계, 2부요금체계등합리적인방안을강구하여시행할수있음. 다만, 주택에서사용하는취사·난방용, 취사전용및난방전용은 2부요금체계로하고, 그외의용도는용도별특성에따라적정한요금체계를적용할수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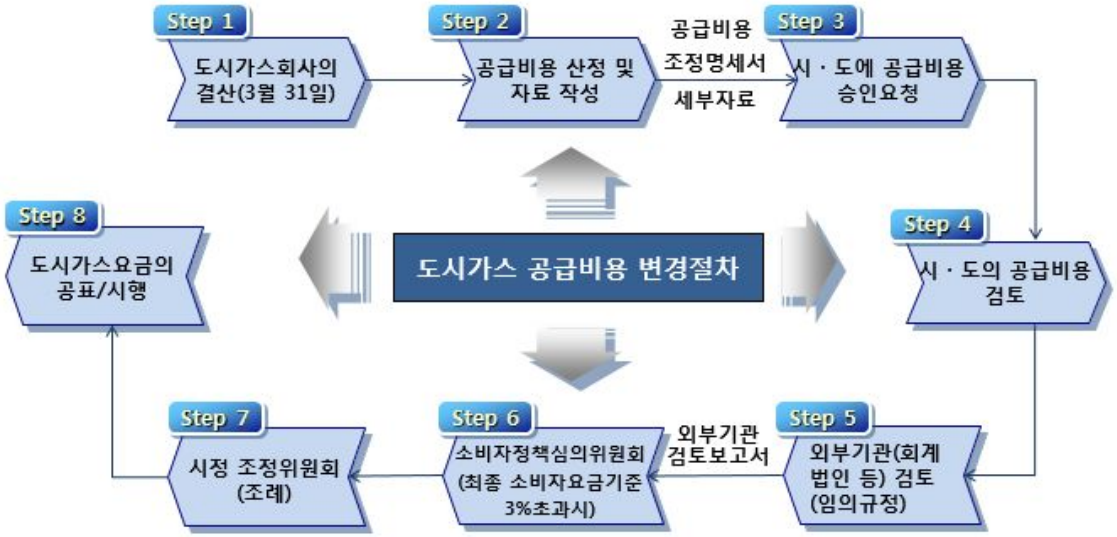
○ 2부요금체계는기본요금과사용량요금으로구성됨.

구분	배부기준
기본요금	- 수요가당일정하게발생하는비용 - 공급관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발행비, 송달비, 지로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교체비등을기초로산정 - 기본요금수준의조정이필요한경우상기비용의일부를감액
사용량요금	- 도시가스사업관련공급비용에서기본요금으로부과되는총괄원가를차감한금액을판매물량으로나누어산정함

○ 도시가스소비자요금수준은“원재료비+도매공급비용+도시가스회사사용량요금”의방법에의하여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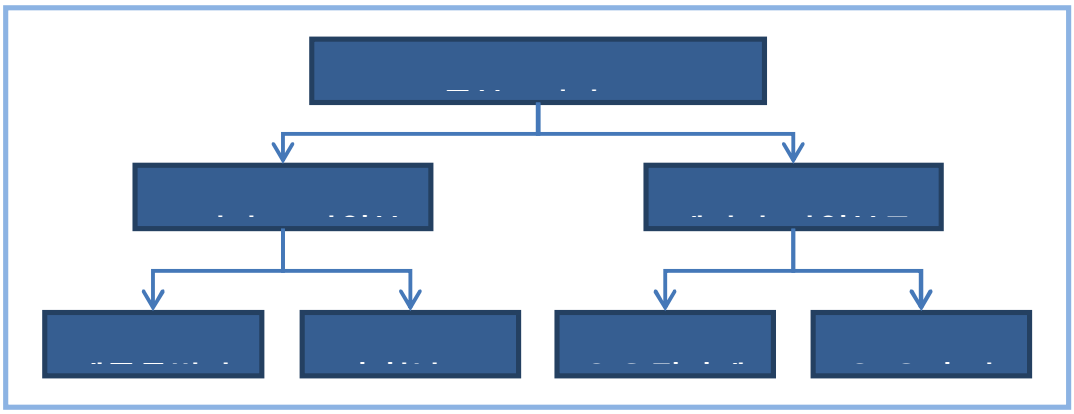
6. 도시가스요금의 조정절차

○ 도시가스회사공급비용은매년 7월 1일이전에확정및부과하도록도시가스회사공급비용산정기준에규정되어있음. 도시가스회사와공급비용산정및승인을위한일반적인조정절차는다음과같음.



Ⅲ. 회사에 대한 이해

○ 중부도시가스㈜의사업구조는도시가스사업부문과에너지사업부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 도시가스사업부문은권역별로세종특별자치시와충청남도로구분되며, 에너지사업부문은 CES(집단에너지)와 CNG 충전사업으로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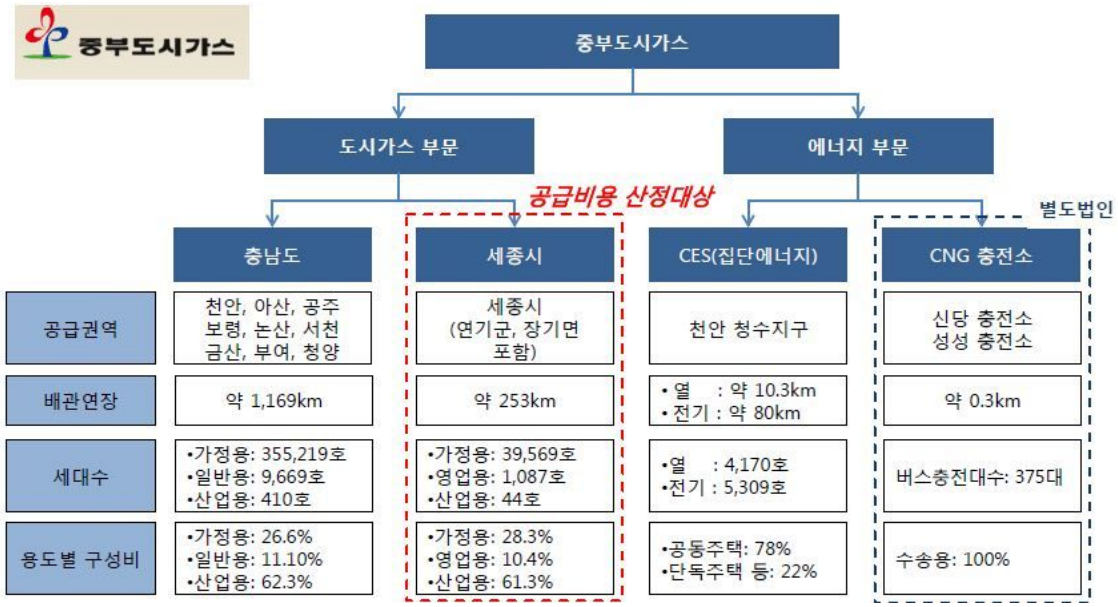
○ 2011년부터세종시가별도의행정구역으로구분됨에따라기존충청남도와세종특별자치시의요금을각각승인해야하는환경의변화가발생하였으며, 기존충청남도에포함되어있던연기군, 공주시장기면(편입후장군면)이 2012년 7월 1일자로세종특별자치시에편입되었음.



○ 따라서 2014년도에도중부도시가스㈜가영위하는도시가스사업을세종특별자치시와기타충남권역으로구분하여원가및투자비를집계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권역

에해당되는원가및투자비를기준으로도시가스요금을산정함.

○ 중부도시가스㈜의도시가스사업부문과에너지사업부문의특성을공급권역, 배관연장, 세대수및용도별구성비의측면에서요약한결과는다음과같음.



○ 중부도시가스㈜의도시가스사업부문중세종특별자치시지역의배관연장은약 253km(2014년예정포함)이며, 세대구성은가정용이 39,569호로세종특별자치시공급권역의대부분의세대를차지하고있으나판매물량측면에서는산업용이 61.3%로공급물량에서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음.

○ 중부도시가스㈜의요금조정을수행함에있어서이러한중부도시가스㈜의사업구조및 영업특성을반영하여 2014년도세종시특별자치시에적용할합리적인수준의공급비용을도출하고자함.

- 도시가스사업부문이외의 CES 사업및 CNG 충전사업과관련된자산을도시가스요금산정시요금기저에서차감하며, 동사업과관련적정원가차감
- 도시가스사업부문내에충청남도의적정원가및투자보수는세종특별자치시공급비용산정시차감

Ⅳ. 공급비용 조정

1. 판매열량차이정산

○ 도시가스회사공급비용산정기준기준제5조의 2(판매열량차이의정산)에의하면요금산정시반영된추정공급열량과사후실적공급열량간의차가±3%를초과하는경우에는 물량오차전체를차기공급비용에서조정하도록하고있음.

○ 단, 직전회계연도말현재도시가스사업으로인하여누적결손금이발생한사업자의경우판매열량차이가 +3%를초과하는경우, 판매열량차이로인한효과를차기공급비용 조정에서제외하고있음.

○ 2013년추정공급열량과실적공급열량간의차이는아래표와같음.

(단위: GJ)

구분	2013년 실적열량	2013년 추정열량	실적대비 추정오차열량	추정오차열량비율
세종	2,555,126	2,714,410	(-)159,284	(-)6.23%

○ 중부도시가스㈜의세종특별자치시공급권역의경우판매열량차이가(-)6.23%로허용오차(±3%) 범위를초과함에따라열량정산대상임.

-도시가스회사공급비용산정기준기준제5조의 2 ③항에의하면판매열량차이가 +3%를초과하는경우정산금액이발생하며이러한정산손익은원칙적으로다음연도공급비용산정시총괄원가에서가감하여반영하지만정산금액으로인하여다음연도평균공급비용의현저한증감을유발하는경우적정한방법으로이연하여반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판매열량차이가요금산정시적용된물가상승률(3개년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을초과하는경우현저한차이가발생하는것으로판단함.

-이에따라중부도시가스는 2014년도공급비용산정시 2013년도의판매열량차이에대하여이연규정을적용하여총판매열량차이 2.5억원중 2014년에 0.8억원을 2014년도공급비용에반영하고 1.7억원을이연함.

2. 판매물량검토

2.1총공급물량의검토

○ 단위당공급비용산정을위한2014년도세종특별자치시지역도시가스추정공급물량은 다음과같음.

(단위:천㎥)

구분	중부도시가스
1. 2013년실적공급물량(*)	58,062
2. 당해년도3월까지실적판매물량	17,424
3. 당해년도4월~12월추장판매물량증가율	18.3%
4.용역기관추정치	60,975
5. 2014년회사제시물량	60,950
6. '13년실적대비회사제시증가율	4.97%
7. 2014년요금반영물량 [Max(4,5)]	60,975

○ 회사는전년도실적판매물량대비4.97% 증가한물량을제시하였으며,가정용에대해서신규입주세대수증가를고려한4,415천㎥, 일반용및산업용에대해서는주택신규입주및산업체가동률증가에따라6,237천㎥증가와한국중부발전에한시적으로공급된 열전용물량 7,800천㎥감소에기인함.

○ 용역기관은회사제시입주세대수에대해과거세종시아파트입주실적을기초로당해년도입주예정인아파트입주세대수를추정하였으며,그결과연말기준으로1,200세대를 추가반영함.

○ 용역기관이추가반영한입주세대는전부취사전용세대로전년도세대당실적판매물량 수준을고려하여추가적으로25천㎥을반영하여추정치를제시함.

○ 당해년도회사제시예상판매물량과용역기관이제시한판매물량간차이는미미하나신규입주세대수를적정하게반영하는것이타당하고판단하여회시물량대비25천㎥를추가반영한60,975천㎥를기초로공급비용을산정함.

2.2용도별공급물량실적검토(2013년실적)

○ 중부도시가스㈜의 2013년도용도별실적판매물량은다음과같음.

(단위:천㎥, %)

구분	실적	구성비율
취사용	2,428	4.2%
취사전용	367	0.6%
개별난방용	9,899	17.0%
중앙난방용	673	1.2%
일반용1	932	1.6%
일반용2	1,251	2.2%
난방용	491	0.8%
냉방용	918	1.6%
산업용	32,939	56.7%
열전용	8,167	14.1%
합계(*)	58,064	100.0%

○ 중부도시가스㈜의 2013년도용도별실적판매물량분석결과산업용물량이56.7%로 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한시적으로중부발전에서사용되고있는열전용물량은 14.1%를차지하고있고,개별난방용물량은17.0%를차지하고있음.

3. 회사제시공급비용에대한검토기준

○ 도시가스회사공급비용산정기준제2조에서는적정원가를 ‘사업자의진실하고능률적인경영하에서도시가스공급에소요되는비용’으로정의하고있음. 회사가제시한공급비용에대하여산정기준에따른적정성평가에사용된기준은다음과같음.

구성항목	산정기준세부내역	항목별검토방안
인건비	- 급여및임금, 상여금, 제수당및퇴직급여를포함	- 회사의인원증감및대안별임금상승률을적용하여회사제시인건비를조정
유·무형자산 상각비	- 공급설비:정액법상각. 세법상내용연수. 시설분담금, 재평가차액, 투자재원제외 - 일반자산:직전년도미상각잔액+당해연도평균취득자산에대한상각비	- 도시가스회사공급비용산정기준에따른감가상각비재계산을통한적정성검토
기타의 영업비용	- 일반경비:각비용항목별변수및물가상승률고려 - 접대비,기밀비등: 법정한도액	- 지급수수료등: 도시가스사업상법적또는안전상지출이필요하므로회사제시액고려조정 - 전년도경비증가실적(3년과 5년)및물가상승률(한국은행발표생산자물가상승률추정치)을고려조정
영업외수익·비용	- 요금기저일관성감안. 실적거치반영	- 이자등금융수익·비용은제외하고가스공급과관련된경상적인수익, 비용은전년도금액을거치하여반영
법인세비용	- 적정투자보수에대한법인세	- 세전투자보수 - 세후투자보수

4. 평균공급비용검토결과

○ 2014년도시가스회사가제시한공급비용에대한개괄적분석을실시하였으며, 주요비용증가요인은 ⅰ) 공급권역내도시가스보급확대필요로인한투자비증가와 ⅱ) 공급확대와관련한인원추가채용에따른인건비증가로파악됨.

○ 2014년도시가스회사가제시공급비용에대한용역기관의조정결과는다음과같음.

(단위: 천원)

계정과목	'14 년제시	검토안	차이
1. 영업비용	4,907,571	3,065,883	(1,841,688)
1.1 인건비	1,777,270	847,302	(929,968)
급여	1,396,300	692,984	(703,316)
퇴직급여	226,650	90,350	(136,300)
복리후생비	154,320	63,968	(90,352)
1.2 경비	3,130,301	2,247,127	(883,174)
감가상각비 등	1,251,841	1,180,395	(71,445)
여비교통비	11,340	7,644	(3,696)
차량유지비	78,150	42,074	(36,076)
통신비	40,380	31,731	(8,649)
수도광열비	8,280	7,322	(958)
소모품비	103,150	76,674	(26,476)
세금과공과	205,220	155,582	(49,638)
임차료	66,210	40,711	(25,499)
수선비	244,780	1,903	(242,877)
보험료	33,980	29,247	(4,733)
접대비	23,200	17,131	(6,069)
회의비	13,480	8,755	(4,725)
광고선전비	14,400	13,311	(1,089)
전산처리비	30,410	29,052	(1,358)
교육훈련비	49,610	41,946	(7,664)
도서인쇄비	5,190	4,134	(1,056)
지급수수료	21,590	20,447	(1,143)
용역비	870,160	492,725	(377,435)
대손상각비	6,460	13	(6,447)
전문직수수료	35,980	34,507	(1,473)

잡비	16,490	11,820	(4,670)
2. 영업외비용	159,646	38,576	(121,070)
3. 영업외수익	(3,136)	(5,257)	(2,121)
4. 법인세비용	498,986	386,408	(112,578)
5. 적정원가	5,563,067	3,485,610	(2,077,457)
6. 투자보수(*1)	1,769,133	1,369,992	(399,141)
6.1 요금기저	20,907,547	19,603,473	(1,304,074)
6.2 투자보수율	7.27%	6.99%	(0.29%)
7. 총괄원가	7,332,200	4,855,603	(2,476,598)
8. 총공급물량(천㎥)	60,950	60,975	25
9. 공급비용(원/㎥)	120.30	79.63	(40.67)
10. 판매량차이조정	1.38	1.38	-
11. 평균공급비용(원/㎥)	121.68	81.01	(40.67)

(*1) 요금기저및투자보수율등투자보수산정세부내역은별첨자료참조

○ 2014년영업외비용중기부금에대해도시가스회사가제시한금액대비용역기관검토안에반영한기부금내역은다음과같음.

(단위: 천원)

구분	기부처	회사제시 금액	검토안
법정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충남지회	10,179	-
	대한적십자대전세종충남지사	517	-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중부재단	81,938	-
	천안성모복지원	202	-
	범죄예방위원천안지역협의회	305	-
	(사)한미우호협회	183	-
	(재)한국선진화포럼	1,018	-
	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	204	-
	(사)한국안보문제연구소	1,018	-
	(사)대한민국해군발전협회	713	-
	사회복지법인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509	-
	아산시사회복지협의회	509	-
	재단법인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2,036	-
	(사)한국도시가스협회	3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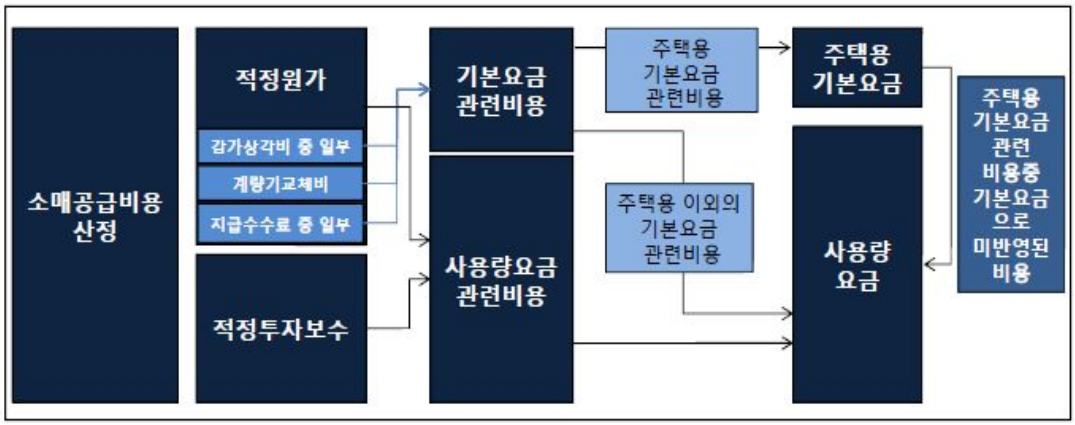
	천안사랑장학재단	1,018	-
	사내근로복지기금	20,357	-
소계		121,070	-

5. 기본요금산정

5.1소매공급비용의부과형태

○ 현재소매공급비용은주택용(취사,취사전용,개별난방, 중앙난방), 일반용(영업1, 영업2),난방용,냉방용, 산업용, 열전용등도시가스최종사용용도에따라총 10가지로분류하여서로상이한소매공급비용을부과하고있음. 특히, 주택용의경우“기본요금+사용량요금”의이부요금체계를채택하고있음.

○ 따라서, 소매공급비용의검토는기본요금관련비용과사용량요금관련비용의적정성을매년검토하여야하며, 기본요금관련비용중기본요금으로부과되지못한비용은사용량요금으로적절히반영되도록하여야함. 소매공급비용의이러한배분과정을그림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음.



○ 상기와같은복잡한단계를거치는것은기본요금관련비용의경우수용가와상관관계가높은비용이므로공급물량(사용량)을단위로부과하는것보다수용가단위를대상으로부과하는것이보다합리적인요금체계로평가하는데기인함.

5.2 주택용기본요금수준분석

○ 앞서언급하였듯이, 주택용소매공급비용은사용량요금만을부과하는기타용도와는 다르게, 사용량요금과기본요금의 2부제요금체계를채택하고있음.

○ 총괄원가에서주택용기본요금관련비용을분리집계한후이를주택용기본요금에부과하되, 요금정책상기본요금으로부과하지못한비용의경우다시사용량요금으로배분하여요금에반영하고있음.

○ 이러한조정방식은"공급비용산정기준제14조 3항 1호"에근거한것으로동규정에서는주택용기본요금관련비용을수요가당일정하게발생하는비용인공급관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발행비, 송달비, 지로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교체비등으로열거하고있으며, 기본요금수준의조정이필요한경우동비용의일부를감액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음.

○ 2014년도기본요금을구성하는세부비용항목및산정된기본요금은다음과같음.

(단위: 천원, 호, 원/월·가구)

구분	중부도시가스
공급관감가상각비	187,872
검침비	2,427
송달비	2,427
고지서발행비	9,025
지로수수료	22,172
안전점검비	39,531
계량기교체비	85,034
소계	343,489
누적가정용수용가수	273,038
기본요금	1,258

㈜누적가정용수용가수=월평균가정용수용가수×12개월

○ 원가주의에의하여산정한각회사별기본요금은위와같으나, 기본요금의안정성을유지하여소비자의혼란을방지할수있는측면을고려할때, 현행요금을동결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 한편, 기본요금관련비용이나기본요금으로부과되지못하는총괄원가는관련수용가(주택난방용)의사용량요금으로부과되는바, 동사용량요금의산정결과는다음과같음.

(단위: 천원, 천가구, 원/월·가구)

구분		중부도시가스
기본요금관련비용(천원)		273,038
기본요금으로회수되는비용(천원)		207,509
	기본요금(원/월·가구)	760
	누적가정용수용가수(천가구)	273
사용량요금으로부과될기본요금관련비용(천원)		65,529
'14년주택용공급예상물량(천m^3)		17,154
주택용사용량배부단가 (기본요금관련비용)(원/m^3)		3.82

6. 취사전용기본요금산정

6.1취사전용지구주택용요금의부과형태

○ 취사전용지구에위치하는주택용수요가의경우집단에너지를통하여난방열을공급받게되므로일반지구에비하여세대당도시가스의사용물량이현저하게낮은반면해당지구에대하여추가적인공급비용이발생하므로세대당발생하는비용은기존의공급권역보다높은수준임.

- 집단에너지를공급받는시설의경우원칙적으로별도의개별난방설비를설치할수없으므로도시가스는소량의취사용도로만사용하게됨.
- 이에반하여취사전용지구는기존에도시가스를공급하고있는지역이아니므로추가적인공급배관공사및기타검침, 관리목적의비용이발생하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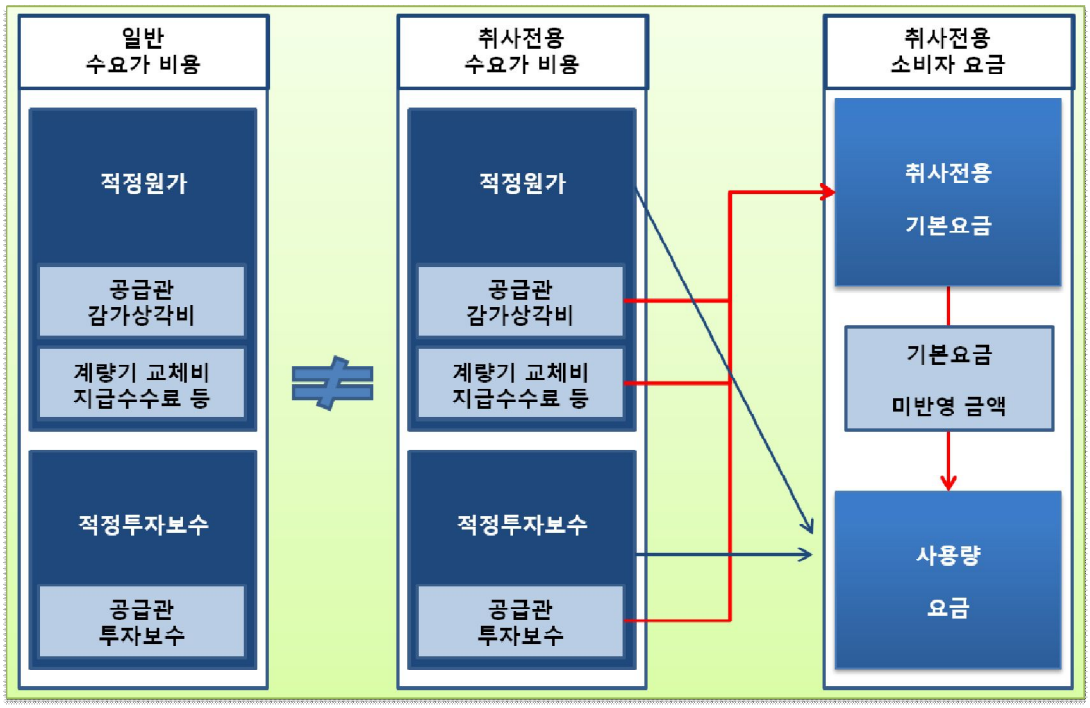
○ 상기와같은비용발생구조의차이로인하여취사전용지구에대하여공급권역과동일한수준의주택용기본요금을부과할경우지역간비용의교차보조문제가발생하며, 이를방지하기위하여별도의취사전용지구에대한별도의요금체계가필요함.

- 취사전용지구에대하여기존의공급권역과동일수준의요금을적용할경우취사전용지구의소비자들은발생비용에비하여낮은수준의요금을부담하고, 기존공급권역의소비자들이추가비용을부담하게되므로결과적으로기존공급권역의소비자가취사전용지구의소비자의요금을보조해주는효과가발생함.

○ 상기의교차보조의문제로인하여주택용중취사전용으로도시가스를사용하는소비자에대하여별도의요금체계가존재함.

○ 따라서상기의소비자들에도시가스를공급하기위하여발생하는비용은별도의시설분담금과도시가스요금(이부요금제: 기본요금+사용량요금)을통하여소비자들로부터회수하도록함.

- 시설분담금 :세종특별자치시의공급규정에따라서취사전용지구의공급배관의설치와관련하여취사전용세대당 262,898 원을시설분담금으로회수함.
- 취사전용기본요금 :시설분담금을제외한취사전용수요가에대한공급관관련비용(감가상각비, 공급배관관련투자보수) 및검침비, 고지서발행비, 송달비, 지로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교체비등수요가수와관련하여발생하는비용을취사전



용기본요금의형태로회수함.

- 사용량요금 :기본요금으로수령하지못한기본요금성비용과사용량에비례하여발생하는비용에대하여사용량요금의형태로회수함 .

6.2취사전용기본요금수준분석

○ 앞서언급하였듯이, 주택용소매공급비용은사용량요금만을부과하는기타용도와는 다르게, 사용량요금과기본요금의 2부제요금체계를채택하고있으며, 취사전용지구의경우도주택용(취사전용)에대하여 2부제요금체계를적용함.

○ 총괄원가에서주택용중취사전용소비자와관련한기본요금관련비용을분리집계한후 이를취사전용기본요금에부과하되, 요금정책상취사전용기본요금으로부과하지못한비용의경우다시사용량요금으로배분하여요금에반영함.

○ 이러한조정방식은“공급비용산정기준제14조 3항 1호”에근거한것으로동규정에서는주택용기본요금관련비용을수요가당일정하게발생하는비용인공급관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발행비, 송달비, 지로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교체비등으로열거하고있으며, 기본요금수준의조정이필요한경우동비용의일부를감액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음.

○ 2014년도취사전용기본요금을구성하는세부비용항목및산정된취사전용기본요금은 다음과같음.

(단위: 천원, 호, 원/월·가구)

구분	중부도시가스
공급관감가상각비	403,904
검침비	23,452
송달비	23,452
고지서발행비	3,198
지로수수료	14,862
안전점검비	48,000
계량기교체비	1,291
소계	518,610
누적취사전용수용가수	138,352
취사전용기본요금	3,745

㈜누적취사전용수용가수=월평균취사전용수용가수×12개월

○ 원가주의에의하여산정한각회사별취사전용기본요금은위와같으나, 기본요금의안정성을유지하여소비자의혼란을방지할수있는측면을고려할때, 현행요금을동결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 한편, 취사전용기본요금관련비용이나취사전용기본요금으로부과되지못하는총괄원가는관련수용가(취사전용)의사용량요금으로부과되는바, 동사용량요금의산정결과는다음과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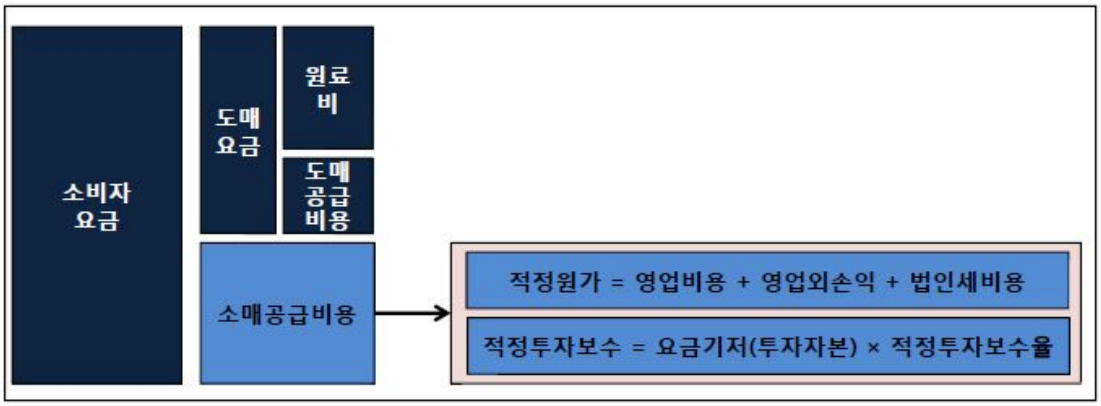
구분		중부도시가스
취사전용기본요금관련비용(천원)		518,610
취사전용기본요금으로회수되는비용(천원)		516,053
	취사전용기본요금(원/월·가구)	3,730
	누적취사전용수용가수(천가구)	138
사용량요금으로부과될기본요금관련비용(천원)		2,107
'14년주택용공급예상물량(천m^3)		796
주택용사용량배부단가 (기본요금관련비용)(원/m^3)		2.65

㈜누적취사전용수용가수=월평균취사전용수용가수×12개월

7. 사용량요금의산정

7.1 최종용도별소비자요금구성

○ 현행도시가스최종용도별소비자요금은원료비(도입부대비용포함)와도매공급비용으로구성된도매요금에소매공급비용을가산하여산정됨.



○ 유가와환율에의하여변동하는원료비는 2개월마다도입원료비가격이요금으로부과되고있는원료비수준과비교하여±3%를초과하여변동하는경우요금으로반영되며, 도매공급비용은도입도매회사인한국가스공사의적정원가와적정투자보수를요금으로반영하는항목으로매년초에산정및요금으로반영됨.

○ 참고로, 2014년 1월1일조정된도매요금을반영한가정난방용소비자요금의구성체계는다음과같음.

원료비		도매공급비용		소매공급비용		평균소비자요금
836.85원/m^3	+	91.21 원/m^3	+	94.88 원/m^3	=	1,022.94원/m^3

단, 주택용의 경우 기본요금 부과(760원/가구·월)
소매공급비용은 중부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적용

7.2최종용도별소비자요금산정방식

○ 평균인하율방식은전년대비당해연도용도별물량구성비율변동을반영한조정후평균공급비용이아닌전년도승인평균공급비용에기초하여당해연도공급비용인하율을산정함에따라당해연도승인총괄원가를적절히회수하지못하도록하는문제를유발함.

용도구분	2013년		2014년		
	판매물량	공급비용	판매물량	조정후 공급비용	공급비용 회수액
가정용	100	100	100	90	9,000
산업용	400	50	1,150	45	51,750
합계	500	60	1,250	54.0(승인) 48.6(실질)	67,500(승인) 60,750(실질)

- '14년 승인 총괄원가: 67,500원
- '14년 승인 판매물량: 1,250㎥
- '14년 평균공급비용 = 67,500÷1,250㎥=54.00원/㎥
- '14년 평균공급비용 인하율 = 54.00원/㎥÷60.00원/㎥−1= (−)10%
- '14년 조정 후 용도별 공급비용 = 2013년 용도별 공급비용×(1−10%)
- '14년 공급비용 실질회수 예상액 = 60,750원
- '14년 실질 평균공급비용 =60,750원÷1,250㎥=48.60원/㎥

○ 따라서용도별공급비용산정시평균인하율방식이아닌전년대비당해연도용도별물량구성비율변동을반영한조정후평균공급비용을기초로당해연도평균공급비용과비교하는방식을적용함.



- 전년도 조정 후 평균공급비용은 전년도('13년) 용도별 공급비용에 당해연도('14년) 용도별 예상 판매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공급비용 회수액을 당해연도 총 예상 판매물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 당해연도('14년) 용도별공급비용산정시적용할인상율은평균인상율방식에의할경우 (+)5.88%이며, 이는전년대비당해연도용도별물량구성비율변동에따른자동조정률 (+)5.88% 및조정후평균공급비용에기초한실질인상율 (+)0.00%로구성됨.

○ 당해연도('14년) 용도별공급비용산정시실질인상율은 0.00%이므로평균인상율방식을적용하였을경우와회수하는총괄원가는동일함.

○ 따라서용도별공급비용은평균인하율방식이아닌전년대비당해연도용도별물량구성비율변동을반영한조정후평균공급비용에기초하여산정한인상율(5.88%, 실질인상율 0.00%)을전년도용도별공급비용에적용하여산정함.

7.3최종용도별소비자요금의산정

○ 평균공급비용산정결과를기준으로하고, 기본요금을동결한다는전제하에검토안을기초로산정된용도별소비자요금(안)은다음과같음.

(단위: 원/㎥)

구분	도매요금	소매공급비용		소비자요금		
	(13.2.22)	현행	조정	현행	조정	증감

					(안)		(안)	금액	비율
사용량요금	주택용	취사용	928.06	38.01	38.01	966.07	966.07	-	0.00%
		취사전용	928.06	100.68	100.68	1028.74	1028.74	-	0.00%
		개별난방	928.06	94.88	94.88	1022.94	1022.94	-	0.00%
		중앙난방	928.06	82.62	82.62	1010.68	1010.68	-	0.00%
	일반용 1(동절기)		908.51	120.37	120.37	1028.88	1028.88	-	0.00%
	일반용 1(하절기)		899.72	120.37	120.37	1020.09	1020.09	-	0.00%
	일반용 1(기타월)		900.92	120.37	120.37	1021.29	1021.29	-	0.00%
	일반용 2(동절기)		908.51	103.31	103.31	1011.82	1011.82	-	0.00%
	일반용 2(하절기)		899.72	103.31	103.31	1003.03	1003.03	-	0.00%
	일반용 2(기타월)		900.92	103.31	103.31	1004.23	1004.23	-	0.00%
	업무난방용		944.27	103.31	103.31	1047.58	1047.58	-	0.00%
	공조용(동절기)		938.97	103.31	103.31	1042.28	1042.28	-	0.00%
	공조용(하절기)		598.69	57.71	57.71	656.40	656.40	-	0.00%
	공조용(기타월)		917.27	103.31	103.31	1020.58	1020.58	-	0.00%
	산업용(동절기)		897.62	57.71	57.71	955.33	955.33	-	0.00%
	산업용(하절기)		875.71	57.71	57.71	933.42	933.42	-	0.00%
	산업용(기타월)		877.95	57.71	57.71	935.66	935.66	-	0.00%
	열전용		971.85	71.67	71.67	1043.52	1043.52	-	0.00%
	합계		902.75	76.51	81.01	979.26	983.76	4.50	0.46%

(*) 동절기: 12~3월, 하절기: 6~9월, 기타월: 4, 5, 10, 11월

7.4 최종용도별 소비자요금의 산정(열량단위, MJ)

○ 평균공급비용산정결과를기준으로하고, 기본요금을동결한다는전제하에검토안을 기초로산정된용도별소비자요금(안)은다음과같음.

(단위: 원/MJ)

구분	도매요금	소매공급비용		소비자요금		
	(13.2.22)	현행	조정	현행	조정	증감

					(안)		(안)	금액	비율
사용량요금	주택용	취사용	21.3150	0.8728	0.8728	22.1878	22.1878	-	0.00%
		취사전용	21.3150	2.3123	2.3123	23.6273	23.6273	-	0.00%
		개별난방	21.3150	2.1793	2.1793	23.4943	23.4943	-	0.00%
		중앙난방	21.3150	1.8976	1.8976	23.2126	23.2126	-	0.00%
	일반용 1(동절기)		20.8662	2.7647	2.7647	23.6309	23.6309	-	0.00%
	일반용 1(하절기)		20.6642	2.7647	2.7647	23.4289	23.4289	-	0.00%
	일반용 1(기타월)		20.6918	2.7647	2.7647	23.4565	23.4565	-	0.00%
	일반용 2(동절기)		20.8662	2.3727	2.3727	23.2389	23.2389	-	0.00%
	일반용 2(하절기)		20.6642	2.3727	2.3727	23.0369	23.0369	-	0.00%
	일반용 2(기타월)		20.6918	2.3727	2.3727	23.0645	23.0645	-	0.00%
	업무난방용		21.6875	2.3727	2.3727	24.0602	24.0602	-	0.00%
	공조용(동절기)		21.5658	2.3727	2.3727	23.9385	23.9385	-	0.00%
	공조용(하절기)		13.7503	1.3255	1.3255	15.0758	15.0758	-	0.00%
	공조용(기타월)		21.0673	2.3727	2.3727	23.4400	23.4400	-	0.00%
	산업용(동절기)		20.6161	1.3255	1.3255	21.9416	21.9416	-	0.00%
	산업용(하절기)		20.1128	1.3255	1.3255	21.4383	21.4383	-	0.00%
	산업용(기타월)		20.1643	1.3255	1.3255	21.4898	21.4898	-	0.00%
	열전용		22.3209	1.6461	1.6461	23.9670	23.9670	-	0.00%
	합계		20.7339	1.7572	1.8606	22.4911	22.5945	0.1034	0.46%

(*) 동절기: 12~3월, 하절기: 6~9월, 기타월: 4, 5, 10, 11월

Ⅴ. 기타 검토사항

1. 사회복지시설공급비용경감부문검토

○ 사회복지시설은요금산정시, 일반적으로업무난방용물량에해당되나, 실제로사회복지시설에대한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가스57253-259 ('01. 6. 19))에따라산업용요금을적용하고있음.

- 사회복지시설은원칙적으로업무난방용요금인 105.74원/㎥(중부도시가스기준)의 소매공급비용이적용되어야함.
-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사회복지시설에대한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에따라산업용요금인 59.07원/㎥의소매공급비용이적용되고있음.

○ 이에따라, 승인요금과적용요금간의차이에해당되는소매공급비용을도시가스사업자가부담하고있는실정임.

○ 그러나, 실질적으로이러한사업자의추가손실은합리적이지않으며, 사회복지시설에공급이예상되는물량을산업용에포함하거나, 해당용도를신설하는방안을통해공급비용산정에반영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판단됨.

2. 타지역도시가스회사와의공급비용차이분석

○ 2013말 현재 전국 30개 지역에 도시가스(LNG)가 공급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도시가스요금은 각 지역별 회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타 시·도의 공급비용 비교 검토를 위하여 각 지역별 도시가스공급물량(2014년 1월 1일 기준)과 평균공급비용을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단위: 원/㎥)

지역	주택용			업무	일반용		냉방용	산업용	평균	비고
	취사용	개별 난방	중앙 난방	난방	영업용1	영업용2	(하절기)	(동절기)		
서울	39.86	45.31	45.31	56.87	100.48	56.87	35.64	19.73	53.00	
	967.91	973.36	973.36	1001.14	1009.00	965.38	634.33	917.35		기본요금 840
인천	55.50	56.87	56.87	65.69	108.78	65.69	40.61	32.11	47.69	
	983.56	984.93	984.93	1009.97	1017.29	974.21	639.30	929.74		기본요금 790
부산	42.42	107.66	97.12	122.76	122.76	83.74	98.04	51.21	84.46	기본요금 800
	970.48	1035.71	1025.18	1067.03	1031.27	992.25	696.73	948.83		취사전용 1,000
대구	51.66	99.52	85.56	119.39	121.88	119.39	70.94	36.26	71.74	
	979.71	1027.57	1013.62	1063.66	1030.40	1027.90	669.63	933.88		기본요금 775
광주	47.00	99.52	99.52	96.69	121.84	83.03	43.22	43.22	88.49	
해양	975.05	1027.57	1027.57	1040.97	1030.36	991.54	641.91	940.84		기본요금 750
대전	55.81	108.21	108.21	111.76	130.01	111.75	54.03	49.10	80.09	
충남	983.86	1036.27	1036.27	1056.04	1038.53	1020.26	652.72	946.73		기본요금 760
울산	45.39	80.83	80.80	89.52	90.42	64.10	30.47	20.35	28.39	
경동	973.45	1008.89	1008.86	1033.79	998.93	972.61	629.16	917.98		기본요금 778
세종	38.00	94.89	82.62	103.31	120.38	103.31	57.71	57.71	76.51	기본요금 760
중부	966.06	1022.94	1010.68	1047.58	1028.89	1011.82	656.40	955.34		취사전용 3,730
경기	60.41	58.95	58.95	69.42	113.48	69.42	40.21	40.62	54.16	
	988.46	987.00	987.00	1013.70	1022.00	977.94	638.90	938.24		기본 요금 790
강원	130.96	130.96	142.63	148.52	144.27	147.22	124.52	124.52	135.00	
춘천	1059.01	1059.01	1070.68	1092.80	1052.79	1055.74	723.21	1022.15		기본요금 950
강원	123.19	123.19	133.09	149.17	133.72	133.26	124.07	124.07	127.25	
원주	1051.24	1051.24	1061.14	1093.44	1042.24	1041.78	722.76	1021.69		기본요금 950
강원	191.82	191.82	185.55	184.15	180.32	179.10	175.95	168.80	198.53	
영동	1119.88	1119.88	1113.60	1128.43	1088.83	1087.62	774.64	1066.43		기본요금 950
충북	101.06	91.72	69.88	105.18	88.40	88.40	66.63	61.94	83.04	기본요금 1,060
청주	1029.11	1019.77	997.93	1049.46	996.91	996.91	665.32	959.56		취사전용 5,759
충북	111.14	101.73	97.69	92.50	113.20	113.20	60.46	59.98	89.24	기본요금 1,825
충주	1039.20	1029.79	1025.75	1036.77	1021.71	1021.71	659.15	957.61		취사전용 3,212
충남	38.90	97.12	84.57	105.74	123.21	105.74	59.07	59.07	71.13	
천안	966.95	1025.18	1012.62	1050.01	1031.72	1014.26	657.76	956.70		기본요금 760
충남	59.43	108.68	91.34	112.68	121.16	121.16	53.41	57.04	58.54	기본요금 760
서산	987.48	1036.74	1019.40	1056.96	1029.68	1029.68	652.09	954.66		취사전용 2,400

전북	83.80	83.80	73.94	92.72	92.72	92.72	54.07	54.07	78.77	
전주	1011.85	1011.85	1002.00	1037.00	1001.24	1001.24	652.76	951.70		기본요금 750
전북	97.10	97.10	89.31	108.95	108.95	108.95	53.30	55.30	64.92	
군산	1025.15	1025.15	1017.37	1053.22	1017.46	1017.46	651.99	952.93		기본요금 750
전북	112.30	112.30	102.44	125.61	125.61	125.61	126.52	92.67	112.52	
익산	1040.35	1040.35	1030.49	1069.88	1034.12	1034.12	725.21	990.30		기본요금 750
전남	123.99	123.99	123.99	125.86	147.62	144.79	69.92	58.78	92.94	
목포	1052.05	1052.05	1052.05	1070.13	1056.14	1053.30	668.60	956.40		기본요금 750
전남	123.99	123.99	123.99	128.86	128.31	123.66	69.96	75.29	94.66	
순천	1052.05	1052.05	1052.05	1073.13	1036.83	1032.18	668.64	972.92		기본요금 750
전남	91.81	91.81	91.81	102.70	102.51	102.70	69.96	70.22	76.22	
여수	1019.87	1019.87	1019.87	1046.97	1011.02	1011.21	668.64	967.84		기본요금 750
경남	120.45	120.45	115.21	126.11	125.34	104.99	78.44	77.06	94.82	기본요금 750
창원	1048.50	1048.50	1043.26	1070.38	1033.86	1013.51	677.13	974.68		취사전용 1,500
경남	131.94	131.94	131.94	167.18	181.98	153.63	124.62	122.51	119.83	기본요금 1,000
진주	1059.99	1059.99	1059.99	1111.45	1090.50	1062.15	723.31	1020.14		취사전용 1,000
경북	97.65	91.83	91.83	106.47	107.04	107.04	72.62	82.47	77.69	
포항	1025.70	1019.88	1019.88	1050.74	1015.56	1015.56	671.31	980.10		기본요금 750
경북	90.82	89.00	89.00	93.41	92.97	92.97	63.21	73.16	77.60	
구미	1018.88	1017.06	1017.06	1037.68	1001.48	1001.48	661.90	970.79		기본요금 750
경북	116.81	103.73	103.73	117.66	116.84	116.84	70.12	79.80	93.04	
경주	1044.86	1031.78	1031.78	1061.94	1025.35	1025.35	668.80	977.43		기본요금 810
경북	179.98	169.99	169.99	182.22	154.18	154.18	138.18	136.40	152.04	
안동	1108.04	1098.04	1098.04	1126.49	1062.69	1062.69	736.87	1034.03		기본요금 750

(*) 2014.1.1 기준

○ 위의 자료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공급비용은76.51원/㎥(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공급비용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공급물량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따라서 서울시, 경기도와 같이 공급물량이 많은 지역의 공급비용이 낮고, 공급물량이 적은 지방 중소도시는 공급비용이 높은 것이 일반적임.

○ 세종특별자치시평균공급비용은공급물량이유사한지역과산업용물량의구성비율에 따라차이가존재하나, 관련요소를고려할때적정한수준으로판단됨.

3. 지자체배관투자지원사항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의 안전과 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해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기존 연기군,조치원읍 등 충청남도 구 도심의 일부가 편입되어 있어 새로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외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미공급지역이 다수 존재함.

○ 해당 지역은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최소세대수 요건에 미달하는 지역으로 수요자가 높은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한 도시가스회사가 투자를 기피하는 지역임.

○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가스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에 대해 배관투자를 조건으로 중부도시가스㈜와 매년 협약을 맺어 경제성 미발생 지역에 대한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과 투자비의 일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13년 배관연장 18km 총 투자비 61억원 중 41억원을 세종특별자치시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의면 168필지,금남면370필지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 공급을 수행하였으며,당해년도에는 배관연장 17km 총 투자비 81억원 중 52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조치원읍신안리 일원 외 7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예정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 및 지원방안은 기존 에너지 복지에서 소외되었던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부담 절감에 기여하는 동시에 배관투자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미공급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따른 평균 공급비용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 따라서 앞서 타 지자체와의 평균공급비용 비교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의 단위 면적당 인구수,배관공급 대상면적,가구당 사용물량 수준은 강원도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 및 방식에 의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급비용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요금변동에따른 2014년도손익분석

○ 2014 년 승인 용도별 판매물량을 기초로 2013 년 용도별 공급비용과 2014 년 용도별 공급비용 최적안을 기초로 중부도시가스㈜의 손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년기준	2014 년기준
기본요금매출액	724	724
사용량요금매출액	58,966	58,966
매출원가및판매비와관리비	58,235	58,235
사업자손익	1,455	1,455

○ 2014 년 승인 용도별 공급비용은 2013 년에 비해동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3 년 용도별 공급비용에 기초한 소비자요금을 2014 년 용도별 판매물량에 적용시 2014 년 승인 용도별 공급비용에 기초할 때와 비교해도 중부도시가스㈜의 이익이 동일할 것으로 예상됨

[별첨 1] 적정투자보수 세부산정 내역

▶적정투자보수세부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2014 년제시금액	조정금액	조정후금액
1. 요금기저	**20,908**	**(1,305)**	**19,603**
1.1 운전자금	571	(418)	**153**
영업비용계	4,908	(3,899)	1,009
(-)감가상각비	1,252	(1,211)	41
(-)퇴직급여	227	(178)	49
(-)대손상각비	6	(6)	-
현금지출경비	3,423	(2,504)	919
1.2유형자산	**20,337**	**(887)**	**19,450**
1.3 무형자산	**-**	**-**	**-**
2. 투자보수율	**7.27%**	**(0.28%)**	**6.99%**
3. 투자보수	**1,520**	**(150)**	**1,370**

▶유형자산명세서

(단위: 백만원)

구분	전기말 미상각 잔액	당기 증가	당기 감소	당기 감가 상각비	당기말 미상각 잔액	기초기말 평균잔액
토지	207	-	-	-	207	207
건물	181	-	-	8	173	177
구축물	1	-	-	-	1	1
공급설비	14,770	4,506	-	1,188	18,088	16,429
차량운반구	121	57	-	12	166	143
공구와기구	62	8	-	9	61	61
건설중인자산	-	-	-	-	-	2,432
계	15,341	4,571	-	1,216	18,696	19,450
요금기저반영유형자산						**19,450**

(*)상기의명세서는조정사항반영후도시가스사업부의유형자산명세임.

(**) 건설중인자산의기초기말평균잔액은공공요금산정기준제 12조에따라산정

▶투자보수율명세서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2013 년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1. 자기자본	**107,834**	**2,980**	**110,814**	
자본금불입액	8,100	-	8,100	
당기순이익누계액	126,784	-	126,784	
(-)배당금지급누계액	(24,070)	-	(24,070)	
요금기저산입건중자산	(2,980)	2,980	-	
2. 타인자본	**24,126**	**9,361**	**33,487**	
타인자본적수	289,516	**112,329**	401,845	
월평균차입금	**24,126**	**9,361**	**33,487**	
3. 자기자본비율	**81.7%**	**(4.9%)**	**76.8%**	**1÷(1+2)**
4. 타인자본비율	**18.3%**	**4.9%**	**23.2%**	**2÷(1+2)**
5. 자기자본보수율	**8.33%**	**-**	**8.33%**	
6. 타인자본보수율	**2.54%**	**-**	**2.54%**	
7. 적정투자보수율	**7.27%**	**(0.28%)**	**6.99%**	**(3×5)+(4×6)**

[별첨2] 시설분담금 산정 관련 주요 사항

▶연도별원시취득가액

(단위: 백만원)

취득년도	시설분담금분	투자재원분	회사조달분	소계
94년이전취득분	-	-	-	-
95년~98년취득분	434	-	824	1,258
99년이후취득분	25,744	-	21,394	47,138
계	26,178	-	22,218	48,396

▶용도별수용가수및사용량('14년)

(단위: 개, 천㎥)

구분	수용가수	사용량
취사용	171	3,793
취사전용	17,403	796
개별난방용	23,196	12,672
중앙난방용(*)	7	689
일반용1	533	1,528
일반용2	281	1,839
난방용	236	683
냉방용	36	1,156
산업용	44	37,381
열전용	1	438
계	41,908	60,975

(*)중앙난방용 수용가 수는 취사용에 수용가 수와 중첩됨.